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
----------	-----

2014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시내(마을)버스의 노상박차 등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도시 교통정책 일환으로 시 외곽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시내버스업체에 제공하여 임차사용 중에 있음
- 그러나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이 높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목적과 공영차고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변경함(안 제5조)
-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수정 (안 제4조 및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4. 6. 19. ~ 7. 9.
-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변경하고,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관련

-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66개 회사의 차고지 이용현황을 보면 자가차고지 16개사(24.2%), 공영차고지 24개사(36.4%), 자가차고지와 공영차고지를 모두 이용하는 회사는 26개사(39.4%)임

<시내버스 회사의 차고지 이용현황>

구 분	회사수(개)	비율(%)
자가차고지	16	24.2
공영차고지	24	36.4
자가&공영차고지	26	39.4
합 계	66	100.0

-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의 항목별 내용에 따르면¹⁾, 차고지비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13년 현재 차고지 1㎡당 공시지가는 최소 54,400원부터 최대 7,710,000원까지²⁾ 약 14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1) 2013년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2013.1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원가보전율은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100%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2) 차고지 공시지가 : 구리시 수택동 차고지(54,400원) 및 서초구 염곡동 차고지(7,710,000원)

〈'13년도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의 보유비 중 차고지비 산정방식〉

-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을(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80%) 적용
 - 1㎡당 공시지가 × 주차장사용면적(㎡) × 부가가치세 × 0.8
 - ▶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 대당 40㎡ 적용(중형은 대형의 70% 적용)
 - 1㎡당 공시지가 × 0.025(공영차고지 사용요율 준용) ÷ 365 × 40㎡(대형 버스 면적기준) × 주차대수
 - ▶ 차고지비 산정방식
 - (공영차고지비 + 자가차고지비) ÷ 총 주차대수 = 차고지비 단가

-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춤으로써 최대 141배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차고지비 지출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비용추계 내역상 서울시 세입감소(307억 75백만원)보다 세출 감소(493억 34백만원)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재정여건 개선에 다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축소의 문제점

- 동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 의도대로 서울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 감소와 동시에 자가차고지의 차고지비 단가 산정방식 역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자가차고지의 경우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시내버스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반면 이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가차고지의 차고지비는 시내버스 회사가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해주는 형식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회사입장에서는 차고지 보유 자체가 회사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사항임

따라서, 66개 시내버스 회사 중 자가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42개 회사(63.6%)는 차고지 보유에 따른 회사 수익의 60%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영차고지의 경우 현재 2013년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차고지비의 80%를 보전해 주는 반면, 2014년 90%, 2015년 100%를 보전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므로, 공영차고지 공시지가 차이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 등 (안 제4조 및 안 제7조 등)

- 동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2014.1.7.)·시행(2014.7.4.)됨에 따라³⁾ 현행 조례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의 제명이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하여 개정·시행(2009.6.9.)됨에 따라⁴⁾ 현행 조례 중 이를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3)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제21조제1항 및 제3항)

4) 법률의 제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⁵⁾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조례 중 사용료 감면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제4호 중 “ 「소음·진동규제법」 ”을 “ 「소음·진동관리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개정 2012.1.5., 2013.3.28.〉</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09.29.)</p>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p>

현행	개정안
<p>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 km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03.17., 2009.09.29.)</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2009.09.29.)</p>	<p><u>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u></p> <p><u>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u></p> <p><u>2.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p>	<p>제5조(사용료) ① ----- ----- ----- ----- ----- -----</p>

현행	개정안
<p>를 부과·징수한다.</p> <p>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u>1000분의 25</u></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u>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의 일정기간 분을 감면할 수 있다.</u></p>	<p>-----</p> <p>1. -----</p> <p>-----</p> <p>-----</p> <p>-----</p> <p>----- <u>1000분의 10</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03.17., 2008.11.13., 2009.09.29.)</p> <p>1.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장의차량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개정 2009.09.29.)</p> <p>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개정 2009.09.29.)</p> <p>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p>	<p>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2008.11.13., 2009.09.29.)</p> <p>4. 「대기환경보전법」· 「<u>소음·진동규제법</u>」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08.11.13., 2009.09.29.)</p> <p>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개정 2008.11.13. 2009.09.29.)</p>	<p>4. ----- 「<u>소음·진동관리법</u>」 ----- ----- ----- -----</p> <p>5.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공영차고지 사용료 요율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근거: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공시지가 인상률(과거3년 평균 2.28%) 반영
- 세출: 버스업체 지원금(차고지(공영, 자체) 사용료의 80%, 2013년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차고지사용료	-5,935,368	-6,070,694	-6,209,106	-6,209,106	-6,350,674	-30,774,949
	소계(a)	-5,935,368	-6,070,694	-6,209,106	-6,209,106	-6,350,674	-30,774,949
세출	차고지 지원금	-9,470,870	-9,686,806	-9,907,665	-10,020,305	-10,248,768	-49,334,414
	소계(b)	-9,470,870	-9,686,806	-9,907,665	-10,020,305	-10,248,768	-49,334,414
□ 총 비용(a-b)		3,535,502	3,616,111	3,698,559	3,811,199	3,898,095	18,559,465

4. 재원조달 방안

-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추가 재원조달 방안 요하지 않음

5. 작성자: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박성재 (전화 2133-237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세입 및 세출)

(단위:천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세입	현행요율	10,066,676	10,296,196	10,530,949	10,530,949	10,771,055	52,195,826
	변경요율	4,131,308	4,225,502	4,321,843	4,321,843	4,420,381	21,420,878
	세입감소	5,935,368	6,070,694	6,209,106	6,209,106	6,350,674	30,774,949
세출	현행요율	15,924,300	16,287,374	16,658,726	16,846,460	17,230,560	82,947,420
	변경요율	6,453,430	6,600,568	6,751,061	6,826,155	6,981,791	33,613,006
	세출감소	9,470,870	9,686,806	9,907,665	10,020,305	10,248,768	49,334,414